

조례정비대상목록

내무위원회 소관

1. 대구직할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직할시달서구소송수행자포상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달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직할시달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직할시달서구체육진형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10. 대구직할시달서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11. 대구직할시달서구수도공사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
지조례(안)
12. 대구직할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39
----------	-------

제출일자 : 1993. 12. 7.

제안자 : 우승기내무위원장외 11인

1. 제안이유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총 17항에 지역여건의 변화등으로 사실상 필요없는 사항 및 관련규정 삭제된 조항들을 개정함으로써 구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
- 유통근대화촉진법 시행령 제16조
-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3. 주요골자

-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관련 규정삭제로 인하여 조문변경(제2조제2항)
- 유통근대화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는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도에 지방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므로(제3조결정사항11호삭제)
- 91. 12. 31 국무총리훈령 제67호의 근거규정폐지로(제3조결정사항 15호 삭제)
- 농촌공장유치에관한사항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4호에 특별시, 직할시는 제외되어 있음. (제3조 결정사항 25호 삭제)
- 위원회에 의안 제출기간 연장 및 위원장의 권한축소 또는 법률용어 개정(제4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4. 개정조례(안) : 별첨

대구직할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단서조항 “제12호 및 제15호”를 “제11호”로 한다.

제3조중 “제11호 제15호 제25호”를 “삭제”한다.

제4조 제3항 중 “에서”를 “에”로 “24시간”을 “2일”로 한다.

동조 제4항 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동조 제5항 중 “위워장이 결정권을 가지다”를 “부결될 것으로 본다”로 하다

동조 제6항 중 “저항”을 “제5항”으로 하다.

부 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신구종무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2 조(구성) ①(생략)	제 2 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 <u>제12호</u> 및 <u>제15호</u> 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u>제11호</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
⑤ (생략)	⑤ (")

대구직할시달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40
----------	-------

제출일자 : 1993. 12. 7.

제안자 : 우승기내무위원장외 11인

1. 제안이유

소송업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 특별포상금 지급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소송업무 수행에 승소한 자에게 특별포상금 지급이 불명확하여 혼동이 야기됨으로 본 조문에 포상금 문안을 삽입코자 함. (제5조 제2항)

3.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지급액의 6배”를 “포상금 지급액의 6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5 조(포상금지급액) ① (생략)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u>지급액의 6배</u>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 5 조(포상금지급액) ① (현행과 같음). ②<u>포상금지급액의 6배</u></p>

대구직할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41
----------	-------

제출일자 : 1993. 12. 7.

제안자 : 우승기내무위원장외 11인

1. 제안이유

의정활동 사항등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함.

2. 주요골자

- 계재사항에 의회활동 사항을 신설코자 함(제3조)
-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연임조문 삽입함(제6조제5항)

3.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기재사항”을 “계재사항”으로 한다.

동조 “제2호 내지 제9호”를 “제3호내지 제10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회활동사항”

제6조제5항중 “한다”를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3 조 (<u>기재사항</u>) 구보에는 다음사항을 기재 한다.</p> <p>1. (생략) (신설)</p> <p>2. ~9. (생략)</p> <p>제 6 조 (구성) ①~④(생략) ⑤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제 3 조 (<u>기재사항</u>)</p> <p>1. (현행과 같음)</p> <p>2. <u>의회활동사항</u></p> <p>3. ~10. (현행 제2호 내지 제9호와 같음)</p> <p>제 6 조 (구성) ①~④(현행과 같음) ⑤ <u>하되</u>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대구직할시달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42

제출일자 : 1993. 12. 7.

제안자 : 우승기내무위원장외 11인

1. 제안이유

구자체 공무원 시험은 6급이하만 실시함으로 5급이하로 규정된 조항을 6급이하로 변경하고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 감시수당을 공휴일에 한하여, 시조례와 동일하게 인상코자 함.

2. 주요골자

- 별표증 채점수당란 5급이하의 시험을 6급이하의 시험수당 개정(제2조)
- 별표증 감시수당란 공휴일 지급하는 수당을 시조례와 같이 인상조정

3.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증 “5급”을 “6급”으로 한다.

동조 별표증 감시수당 공휴일 “8,000”원을 “9,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시험수당지급기준표 채점수당란 “<u>5급</u> 이하의 시험” 감시수당란 공휴일 : <u>8,000원</u></p>	<p>[별표] 시험수당지급기준표 채점수당란 “<u>6급</u> 이하의 시험” 감시수당란 공휴일 : <u>9,000원</u></p>

大邱直轄市達西區現行條例中改正及廢止條例(案)

達西區議會內務委員會

대구직할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43

제출일자 : 1993. 12. 7.

제안자 : 우승기내무위원장외 11인

1. 제안이유

상장수여 공적대상이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의 1의 조문으로 자구수정(제7조)

3.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포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중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 호의 1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7 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p>제 7 조(상장) 다음 각 호의 1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2. 3.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44
----------	-------

제출일자 : 1993. 12. 7.

제안자 : 우승기내무위원장외 11인

1. 제안이유

현장지도여비 지급 근거인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수정

2. 근거법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4항 제5호

3. 주요골자

○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지도여비 대상조문을 개정코자 함(제5조)

4.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4호”를 “제104조제4항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5 조(현장지도여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 <u>24호</u>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현지 교통비를 자급한다.	제 5 조(현장지도여비) 제104조제4항제5호

대구직할시달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45
----------	-------

제출일자 : 1993. 12. 7.

제안자 : 우승기내무위원장외 11인

1. 제안이유

동정자문위원회의 의원정수를 인구비례에 따라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을 인구비례와는 구분 없이 위원정수를 동일하게 25인이내로 구성함으로서 동의 주요시책에 관하여 자문을 구함에 있어 많은 주민을 참여코자 함.

2. 주요골자

- 동정의 주요시책 사항에 대하여 많은 주민을 참여시켜 자문에 응함.
- 위원구성은 인구 1만미만인 동은 15인~20인 이내, 인구 1만이상인 동은 20~25인이내로 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25인이내로 조정 통일(제3조 1항)

3.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위원자 1인, 부위원장 1인과 인구 1만명미만인 동은 15인~20인이내, 인구 1만명 이상은 동은 20인~25인”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3 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 위원장 1인과 인구 1만명 미만인 동은 15인 ~20인이내 인구 1만명이상인 동은 20인~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 3 조(구성)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46
----------	-------

제출일자 : 1993. 12. 7.

제안자 : 우승기내무위원장외 11인

1. 제안이유

- 장학금 수혜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년도에는 1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자녀수를 제한하고 타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 지방화시대 맞지 않는 조항인 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의견참작 규정을 삭제

2. 주요골자

- 단서조항신설 당해년도 1자녀에 한하며 타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제3조)
- 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의견을 참작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단서조항에 장학생 선발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제4조제1항)

3.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장학금지급년도별로 통장1인에 대하여 1자녀에 한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 제1항중 “시교육 위원회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조문을 삭제하고 말미에 “장학생 선발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대구직할시달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47
----------	-------

제출일자 : 1993. 12. 7.

제안자 : 우승기내무위원장외 11인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행정실무자인 계장이 서기업무를 담당하므로서 협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국민체육진흥 협의회 서기를 실무계장으로 지정(제7조제2항)

3.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의장이 지명”을 “체육청소년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7 조(간사등) ① (생략)</p> <p>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u>의장이</u> <u>지명한다.</u></p> <p>③ (생략)</p> <p>④ (생략)</p>	<p>제 7 조(간사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체육청소</u></p> <p><u>년계장으로</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대구직할시달서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93-48
----------	-------

제출일자 : 1993. 12. 7.

제안자 : 우승기내무위원장외 11인

1. 제안이유

- 대구직할시달서구구유재산중 임야의 대부 및 관리를 위해 1988. 5. 1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있으나 운용실적이 없고 대구직할시 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중복됨으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대구직할시달서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

3. 폐지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88. 5. 1 조례 제4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폐지 조례 : 별첨

대구직할시달서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

(제정 1988. 5. 1 조례 제48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달서구의 보통재산중 임야(이하 "구유림"이라 한다)의 대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대부허가)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구유림의 대부분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목축 또는 조림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식량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제 3 조(대부신청) 구유림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유임야 대부신청서를 당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대부대상자) 구유림을 대부받을 수 있는 자는 구내에 다년간 거주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해당자라야 한다.

1. 대부목적의 사업을 달성한 의욕과 재력 및 당해 사업에 대한 시견이 있는 자
2. 관할구청장이 대부 적격지로 추진한 추천한 자

제 5 조(대부기간) 구유림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공 또는 공익사업 대부 : 3년 이내
2. 조림용 대부 : 10년 이내
3. 목축용 대부 : 5년 이내
4. 식량증산을 위한 대부 : 3년 이내

제 6 조(대부료의 산정) 구유림의 대부료, 연액은 대부임야의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도록 다음 각호의 산정율에 의한다.

1. 공공 또는 공익사업 대부 : 임야가격의 100분의 3이상
2. 조림, 목축, 광업, 채광 및 경작목적의 대부 : 대구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산정률

제 7 조(대부료의 납기) 대부료의 납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대부초년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 8 조(지상임목의 소유권)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있어서 벌채되는 임목은 구의 소유로 한다.

제 9 조(대부임야의 사후관리) 구청장은 대부임야에 관하여 매년 1회이상 사업추진상황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 10 조(사용권의 제한) 구유림을 대부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이를 타에 전대하거나 그 사용권을 양도 또는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1 조(대부허가 취소) ① 구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대부받은 날로부터 대부 목적의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할 때
 3. 대부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특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전항의 경우, 기납부된 대부료를 취소 당일까지의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잔액만을 환부한다.

제 12 조(분수림 설정) ① 구유림안에 조림목적의 분수림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1. 인근마을 산림계 : 2정보 이상
 2. 공공기관, 공공단체 : 5정보 이상
 3. 학교, 개인 기념조림 및 기타 : 2정보 이상
- ② 분수림에서 생긴 수익은 9할 이내를 조림자의 수익으로 하고 분수림 설정기간은 제5조를 준용하되,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다.
- ③ 구청장이 관리상 특히 필요할 때 및 조림자가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분수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는 취소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여 분수림의 설정을 취소할 때에는 수익을 분배하거나 조림 및 관리비 상당액을 변상한다.

제 13 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유림의 대부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 지목(구조) :

• 지적(건평) :

○ 대부(사용)기간 :

○ 대부(사용)목적 :

○ 대부(사용)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리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19

신청인 주소 :

성명 :

첨부 인감증명서 1부

대구직할시달서구수도공사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 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93-49
----------	-------

제출일자 : 1993. 12. 7.

제안자 : 우승기내무위원장외 11인

1. 제안이유

- 대구직할시수도공사를 1989년 설립코자 하였으나 중앙의 승인이 되지 않아 수도공사 미설립으로 본 조례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함.

2. 주요골자

- 대구직할시달서구수도공사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

3. 폐지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수도공사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 한조례폐지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수도공사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9. 3. 8 조례 4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폐지 조례 : 별첨

대구직할시수도공사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 1989. 3. 8 조례 제109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공사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면제대상)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공사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토지과다보유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 3 조(면제신청)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자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일)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
- ③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대구직할시달서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50
----------	-------

제출일자 : 1993. 12. 7.

제안자 : 우승기내무위원장외 11인

1.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고층화와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라 반의 획정기준을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
- 당해 지역실정에 밝은자를 통장에 위촉하고 인구노령화에 따라 통장연령 상향조정
- 일반예비군에 대한 통장 우선 위촉조항을 삭제하고 자치화시대에 걸맞는 용어 정비
- 통의 규모를 광역화하고 그에 따른 차별적 수당지급조항 삽입

2. 주요골자

- 권위주의 시대의 관주도 행정용어를 자치시대에 걸맞는 용어로 변경(제2조).
- 아파트 고층화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에 삽입(제3조).
- 인구고령화에 따라 통장 연령을 50세에서 70세로 상향 또는 단서조항 변경(제5조제2항1호)
- 반장의 남, 여 구분 및 일반예비군 우선 위촉 단서조항을 폐지하고 원하는자를 위촉하는 임의 규정 삽입

3.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통. 반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말단침투와”를 “추진과”로 한다.

제3조제1호중 “구성한다”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단서조항중 “범위내에서” 다음에 “공동주택 및”을 삽입한다.

동조 제2호중 “6개반으로 구성한다”를 “24개반으로 구성하며, 40만원 한도내에 규모에 따라 해당을 조정 지급 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를 “관할구역내에 1년이상 거주한 30세이상 7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 남여(지원자 포함)으로서”로 하고 단서조항중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0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를 “다만 신규개발지역에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로 위촉할 수 있다”로 한다.

동조 제2항 제2호중 단서조항중 “일반예비군중 반장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우선 위촉한다.”를 “자중에서 선출 또는 추천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반장 위촉을 원하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로 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2 조(하부조직)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 2 조(하부조직) ① 추진 과
제 3 조(획정기준)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3 조(획정기준) 1.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범위내에서 공동주택 및 할 수 있다. 2. 24개반으로 구성하여 40만원 한도내에서 그 규모에 따라 수당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제 5 조(통. 반장의 위촉) ① (생략) ② 통. 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촉한다.	제 5 조(통. 반장의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1. 관할구역내에 1년이상 거주한 30세이상 7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 남여(지원자포함)으로서 다만, 신규 개발지역에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로 위촉할 수 있다.
1.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이 남자중 50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지도 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등이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야 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통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16조(지방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 설치)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유통근대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이하 “시, 도”라 한다)에 지방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 도 조례를 정한다.

“법령입안 심사기준”(법제처) 교재지침

- 위원회의 회의의 의결방법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규정을 둘 것인지의 여부
위원회의 회의의 의결방법으로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한 경우에는 가부동수인 때에는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부결된 것을 위원장이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예외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지 아니하도록 한다.

대구직할시달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관련근거

대구직할시시험수당지급조례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감시수당	공 휴 일	9,000
------	-------	-------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관련근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제4항

제5조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묘목의 재배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